## 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  IT·핀테크전략국   담당자 변남주   연락처   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을 위해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인터넷망의 클라우드에 위치한 취약점 점검 서버와 내부망 개발서버가 통신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
판단	□ 문의하신 내용은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판단이유	<ul> <li>□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(이하 '전산센터 단말기')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. 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 제1항 제5호)</li> <li>○ 다만, 업무상 불가피하게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),</li> <li>□ 내부망 개발서버가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인터넷망의 클라우드에 위치한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서버와 통신하는 것은 망분리 예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</li> </ul>
	<ul> <li>개발서버의 취약점 점검 Agent는 데이터 추출 이 외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도록 (예. 서버 설정 변경, 프로그램 설치 등) 할 수 없도록 권한을 통제하여야 하며,</li> </ul>

- 개발 서버 네트워크와 **운영 시스템 네트워크는 분리 차단**하고
- 전송 데이터(점검 대상 메타데이터) 및 수신 데이터(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)는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등 유출 또는 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*\*\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** 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